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9
----------	----

2014년 9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9월 4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5일
- 다. 상정결과 :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 9월 2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김의승)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2013. 12. 12. 시행)에 따라 종전 조례에 규정하여 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규정되었으므로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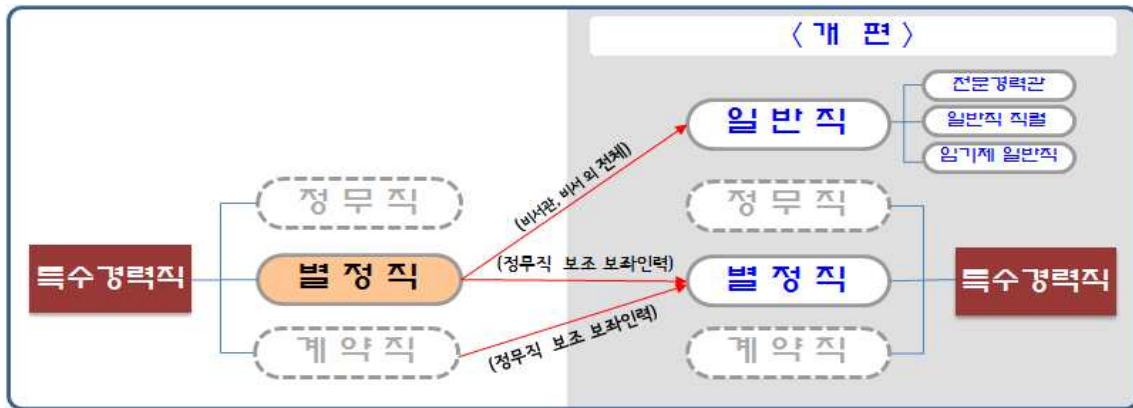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폐지함.

〈별정직 공무원 전환 개요〉

구 분	업무성격	전환개요
별정직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있는 경우	⇒ 해당직렬로 임용, 전담직위 지정 → 전담직위평가 후 해제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으며 특정 전문분야 담당, 순환전보 곤란	⇒ 전문경력관 지정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으며 상당인원 재직, 계급제적 성격	⇒ 직렬을 신설하여 전환
	임기가 있는 직위	⇒ 임기제 일반직

〈 별정직 직종개편 체계도 〉



- 직종 개편(2013.12.12) 당시 126명이던 별정직은 16명만 별정직으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으며, 계약직 공무원 중 비서실장, 정무특보, 국제관계대사 등 정무직 보좌 업무 수행 공무원 20명이 별정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서울시에는 현재 퇴직 등으로 총 35명의 별정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음.

※ 직종 개편 당시 별정직 존치 현황 - 16명

구 분	직급정원	직위분야(대상)	별정직 존치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별정5급	시장비서관(1) 정무비서관(1) 시의회비서관(3)	지방별정직(비서관)
	별정6급	시장비서(1)	지방별정직6급상당(비서)
	별정8급	시의회비서(1)	지방별정직8급상당(비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별정4급	시의회 전문위원(9)	지방별정직4급상당(전문위원)

※ 직종 개편 당시 계약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 현황 - 20명

- 시장실 : 계약가급(8), 계약나급(1)
- 정무부시장실 : 계약가급(6), 계약나급(1), 계약다급(1)
- 시의회 : 계약가급(1), 계약다급(1)
- 국제교류담당관 : 국제관계대사(1)

※ 2014.8월말 기준 비서관 및 비서와 의회전문위원(4급상당)등 별정직은 총 35명임.

〈 별정직공무원 정·현원 현황 〉

(2014.8.31.기준)

구 분	합계			2~3급			4급			5급			6급이하			비고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합 계	37	35	-2	1	1	0	11	10	-1	19	18	-1	6	6	0	
시 장 실	12	11	-1	1	1		1	1		9	8	-1	1	1		결 원
정 무 부 시 장 실	9	9								6	6		3	3		
국 제 교 류 담 당 관	1	1								1	1					국 제 관 계 대 사
시 의 회	15	14	-1				10	9	-1	3	3		2	2		퇴 직

- 폐지하려는 본 조례안의 경우 과거 안전행정부에서 만든 표준안을 반영한 법규로서, 상위 법령의 규정으로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별정직 공무원 인사운영은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하겠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장 보좌를 위해 비서관·비서에 임용된 경우 종전에는 없던 임기만료규정이 임용 당시 자치단체장 또는 의회의장의 임기만료(사임·사직 등 포함)와 함께 면직하도록 대통령령에 신규로 규정되었음.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임용권자) 제4조(임용자격)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5조(임용절차 등)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6조(전보) 제7조(근무상한 연령) 제7조의2(교육훈련) 제8조(당연퇴직) 제9조(직권면직) 제10조(휴직 및 인사관리) 제11조(휴직의 효력)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제13조(징계)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제15조(시행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임용권자) 제4조(임용조건) 제5조(외국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제7조(임용절차) 제6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제8조(근무상한연령) 제12조(면직) 제10조(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제9조(근무성적평정) 제11조(시간제 근무) 제13조(징계 등) 제14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 시의회 전문위원의 경우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부칙 제3조(일반적 경과 조치)에 의거 기존 조례 효력을 유지하여 정년퇴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입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지정(지정일자 : 2012.9.13字)하였으며, 기존 인력 퇴직 후 개방형으로 전환 예정에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르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로도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²⁾
- 의미가 새로워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대하여 전국적인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법령의 체계성을 확보

2) 「지방공무원법」 제2조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한다는 측면과 다른 시·도에서도 거의 다 폐지하였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폐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 정의 변경(지방공무원법 제2조)
(개정 전)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개정 후)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다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인사관리 규정을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통일성을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 자율성 저해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안전행정부의 대통령령으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